

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3-194호(2023.11.1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
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
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
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13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43(일원동615-1번지)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20,876.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태인)
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43,일원개포한신아파트 조합사무실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일 : 2024. 12. 12.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의 요지 : 정비사업비 변경 등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 - 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없음)
 - 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(변경없음)
 - 마. 기타 변경 내역
 -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총수입 변경(추정 비례율 변동없음)
 - 이자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정비사업비 변동 등
6. 기타 문의사항 및 관련 도서 열람 등에 대하여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
(☎02-3423-6076)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☎02-445-0102)
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끝.